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8.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8월 26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229~249호, 보고 제44호)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4차, 임시 제3차 및 서면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2년도 제14차, 임시 제3차 및 서면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228호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29호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제230호 『금융위원회 ombudsman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하여 ombudsman 및 현장소통반에 정책점검·감시, 정책집행 실태조사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 논의 시에 상황을 들어보니 ombudsman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사무관 1명 뿐임. 다른 부처는 ombudsman실이 차관급으로 50명씩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음. 이번에 정책집행 현황점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만 늘리면 금융위 직원만 엄청 고생하게 될 것이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저희들도 국회나 기재부에 얘기해서 같이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함.

○ (위원) 정책 발표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정감사 때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선별적으로라도 후속조치(follow-up)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ombudsman의 업무에 정책집행 현황점검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음. 아쉽게도 새정부 들어서 전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인력을 조금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ombudsman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정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그래서 우선 현행대로 운영

하되, 조금 운영해보고 추후 정규 직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보장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시 및 불공정거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등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2호 『코레이트자산운용(주)와 코레이트투자운용(주)의 합병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산운용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주)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인 코레이트투자운용(주)의 합병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초단기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체계를 단기로 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원래 정책목적에 맞는 테스트베드 점검의 구체적인, 약간 규범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듦.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 내지는 통제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 자체에 기준들을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 기존의 성과보수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사항은 왜 일방향으로만 작동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성과보수의 근본적인 체계에 대한 비판은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순간에 위험하게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사실 이 두 가지를 교정하고 이해상충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Fulcrum Fee* 방식이라는 생각이 듦. 못할 때는 그만큼 보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함. 해외 사례의 경우 수익률 산정 시 기준 운영기간을 보통 1년 아니면 2년 기준으로 적용을 함. 그러니까

* Fulcrum Fee : 기준지표 초과성이나 저성과 시 보수를 가감하는 방식

이것이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단기성과를 나중에 적용되는 수수료에 집어넣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기성과를 수수료에 넣게 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음. 펀드가 들어 오게 되면 등록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 (보고자) 대칭적 구조라는 면에서 위험자산을 갖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수익률 기준을 1년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반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1년치 전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단기 자산운용에 비해 좀 더 신중하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것은 테스트베드 기간 중에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운용전문인력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검증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능력이 운용전문인력을 대체할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신지?
- (위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위원) 로보어드바이저가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이 misleading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은지?

- (보고자) 일반적으로 일임계약이라는 것이 1대1 계약이니까 못하게 하는데,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1대1 계약이라기보다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경우 그 모델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위원) 그러면 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평균수익률을 인정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로보어드바이저 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 (위원)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것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일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수익률을 보여 주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일임계약은 개인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을 평균수익률로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여기에 반영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운용인력이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알고리즘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또는 관리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임.
- (위원)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른데 그 수익률은 매우 일정함.

- (위원)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는지, 다른 것은 평균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데 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수익률을 하기로 했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은지?
- (보고자) 테스트베드를 거치고 통과된 경우 공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허용하는 것임.
- (위원) 코스콤에 테스트베드를 거쳤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평가하고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의미임.
- (위원) 지금 논의를 지켜보니까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그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인데, 이후에도 그 운영에 있어서 제시한 평균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래서 그것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허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임 계약의 경우 평균수익률을 크게 벗어날 위험성이 높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제시된 평균수익률과 실제 운용성과가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 이를 광고로 허용한다고 설명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보고자)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음. 사람이 직접 일임자문을 할 경우에는 언제나 일정하게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반면에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황만 같으면 유사한 평균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상 평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베드를 거쳐서 사용 가능한 정도의 로보어드바이저라면 광고도 허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싶음.

- (위원) 코스콤의 테스트베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분쟁과 관련된 문제, 또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로보어드바이저만 허용해 주는 문제,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 그동안 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비대면 방식 설명을 허용하는 부분도 1년 6개월 동안 운용성과, 위험지표를 공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1년으로 줄여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과 관련해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층이 젊은 층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한다는 전제같다는 생각이 듦.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광고를 허용하고 1년간 운영하면서 운용성과와 위험지표를 코스콤에 공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대면 방식 설명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별도의 보완장치도 말씀드린 수요층 그리고 실제 개선내

용들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

- (위원) 여기 평균수익률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평균수익률인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고 있는 일임계약이 있으면 일임계약 전체 평균수익률인지?
- (보고자) 테스트베드에서 실험하는 기간이 1년 6개월임. 그 동안 실제로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1년 6개월 동안 수익을 낸 것이 얼마나, 그 평균수익률이 얼마나에 대한 내용임.
- (보고자) 사람인 경우는 판단이 그때그때 항시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봄. 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이므로, 어느정도 일관성이 인정되어 이를 허용을 해 주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한을 두었던 것임.
- (위원) 평균수익률을 제시했는데 사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께서 불완전판매라든가 허위과장광고 이슈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 알고리즘이 정말 똑똑해서 사람이 할 때는 기분에 따라서 여기 투자했다가 저기 투자했다가 하는데 로봇이 하니까 과거의 투자패턴을 따라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평균수익률을 광고해도 좋다는 논리로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많이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기존에 있었던 실증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투자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임. 그런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에 오히려 평균수익률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선택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 미래에 대한 수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처럼 로보어드바이저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이상 불가피한 한계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로보어드바이저를 통과해서 시장에 출시를 할 때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테스트베드 기간 중에 수익률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이라도 수익률을 표시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것인지? 만약 첫 번째라면 특별하게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니까 테스트베드 기간에 검증된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괜찮음.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음.
- (위원) 이것이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인데, 지금 현재 운용성과 위험지표는 공표를 안 하고 테스트베드 기간의 것만 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회사마다 서로 자기가 잘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결과치를 낼 수가 없으니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에 내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랬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알고리즘과 다르다고 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위원) 이것이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 때문에 평균수익률을 광고해 주는 이슈가 나온 것임. 그런데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광고를 허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테스트베드 끝나고 1년 이상 썼을 경우 평균수익률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것임. 바꿔서 해줄 것이냐, 테스트베드 후 실제 운용수익으로 해줄 것이냐, 어떤 것을 하실 것이냐는 것임.
- (보고자) 규정상은 실제 운용수익이 제시되어야 함.
-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임. 일임계약 자체가 지금은 다 대면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평균수익률 공시를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임.
- (위원) 첫 번째, 로보어드바이저의 문제점이 판매를 할 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달라는 것임. 두 번째,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비대면 판매 허용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할 때 실제 나온 수익률을 쓰게 해 달라,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 모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그것을 너무 확장을 하셔서 그러면 처음에 고객을 모집할 때 옛날에 했던 것을 써서 처음 한 1년 동안 그 수익률을 쓰는 것은 좋다는 것임.

- (위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음. 로보어드바이저 규정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은 1년 정도 조건부로 해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허용을 안 하는 조건을 붙여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보류하고 다시 하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 (위원) 시행해보고 나중에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지 않는지?
- (보고자) 부언(附言) 드리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면 규정이나 아니면 감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정을 해나갈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음.
- (위원) 그러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은 1년 후에 제도 운용 성과를 다시 한 번 보고하고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음.
- (위원) 외화 MMF 이번에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됨. 저희들이 외환시장에 보면 수출업체들이 주로 많이 벌어들인 외화를 운용하는데 대부분 요구불예금임. 정기예금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유동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러함. 여기 OECD 국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상당한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함. 지금 외화예금 잔액이 900억 원이 넘음. 1,000억 원까지 넘어갔다가 줄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오면 언제 시작이 되는지?

- (보고자) 규정 자체는 8월30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MMF를 준비해서 등록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함.
- (위원) 이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해외에도 보면 MMF 거래규모가 상당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MMF와의 여러 가지 자금 운용이 굉장히 큼.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외환시장의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함. 그만큼 조심스럽게 진행상황을 봐야 됨. 금감원과도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함.
- (위원) MMF는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30% 이상 안정적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장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장부가 평가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그런데 환율이 급변동 되면 외화예금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MMF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함.
- (보고자) 이 얘기가 처음에 언급된 것은 국내 법인들이 갖고 있는 외화가 많음. 그래서 그 외화를 환전을 안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달라는 것에서 외화 MMF를 도입하게 됐음. 이것을 개인한테까지 허용할 경우 환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순차적으로 먼저 법인 것을 한번 해보고, 약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완한 후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개인에게도 허용을 검토할 계획임.

- (위원) 이것은 일단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자가 있고, 외화자금이 요구불예금이나 안정된 자금에서 투자성 자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모니터링은 금감원이 하는지? 한국은행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위원) 한국은행도 해야 될 것임.
- (위원) 아마 외환시장 자체는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하시는데 건전성 측면에서 외화유동성 관리는 금감원의 역할이므로 아마도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과 관련된 영향은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음. 기회가 되면, 외화유동성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 드리겠음.
-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함.
- (위원) 규정을 논의하게 된 가장 기본 이유가 공모펀드의 활성화가 정체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접근했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견수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안들이 현재 경쟁력 제고방안의 내용들이 규정화된 것이라고 생각함. 규정 하나하나 건들이 사전에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精緻)하게 하나하나씩 다 마련이 되어야 시장의 리스크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시장에 공급 측면을 바라본 부분이 강할 수 있어서 시장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과연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들도 정치(精緻)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규정화하고 난 뒤에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후속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3호 안건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규제 완화 등에 대한 필요성 및 투자자보호방안을 고려하여 규정 제4-77조의 개정 여부는 재검토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4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5호 『퍼시픽 라이프 리 인터내셔널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직개편을 통해 퍼시픽 라이프 리 소속 한국지점의 영업을 양도받고자 하는 퍼시픽 라이프 리 인터내셔널 한국지점에 대해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6호 『(주)스마트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로 등록한 (주)스마트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7호 『교보증권(주)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증권(주)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8호 『우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신용정보(주)가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9호 『(주)에이치비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에이치비캐피탈과 퇴직 직원 前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원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0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퇴직자(2명)에 대하여 국외 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수정심의 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3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수정된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외 점포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과거에 무심결에 넘겼던 사안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봤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인지 가능성이라든지, 내규상 책임범위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꼼꼼히 검토하였고 보다 엄밀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2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43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4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조기 대위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채권 매각을 허용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금융거래내용이 신용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군다나 공공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실채권이 되었든 신용부실이 되었든, 현재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임.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게 되어서 이러한 구조로 도입은 하지만 기금 구조의 축소와 동 기금을 통해 이익을 얻은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것을 정부가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4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4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48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4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재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3차례 가계부채 관련 대책내용을 규제의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해 규정화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4분 폐회)